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2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4월 8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4.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영등

포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14조)
- 구민의 의견 수렴 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을 신설(안 제15조제2항)
-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안 제16조~ 제18조)
-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지원 등 (안 제19조~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문화도시 사업에 관하여 살펴보면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의 분야별로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에 근거하여 5년간 최대 200억원(국비50:지방비50)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0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로 우리 구를 포함한 10개 도시를 선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가 유일함. 또한 1년간의 예비도시 사업 추진 후 2021년 12월에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바 1년간의 사업 추진 상황이 최종 지정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1차 문화 도시는 총 7곳이 지정되었으며, 제2차 예비 문화도시는 총 5

곳이 지정되어 있음.

- 현재 우리 구는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를 비전으로 문화협치, 문화공유, 문화다양성, 생태문화를 핵심가치로 우리 구 자체의 다양한 물질·인적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하고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14조는 문화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함.
- 안 제16조에서 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문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9조는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서 문화도시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위탁 시 재정지원의 근거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도시의 지정을 위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려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 최근 각 도시별 고유한 역사적·사회적 자산과 정체성에 따라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영등포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 예술 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도시가 되기를 기대함.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해당 조례안의 신설되는 문화도시위원회 구성 중 위촉 위원에 영등포구민을 추가하여 영등포구민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17조제3항제4호 중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를 “유관기관 및 영등포구민”으로 수정함.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328
------------	-----

제안년월일: 2021년 4월 일

제 안 자: 최봉희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해당 조례안의 신설되는 문화도시위원회 구성 중 위촉 위원에 영등포구민을 추가하여 영등포구민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17조제3항제4호 중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를 “유관기관 및 영등포구민”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3항제4호 중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를 “유관기관 및 영등포
구민”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7조 ① ~ ② (생략)	제17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위원은 ----- ----- --. 1.~3.(현행과 같음) 4. <u>유관기관 및 시민</u> <u>단체 관계자</u> 5.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 ----- --. 1.~3.(현행과 같음) 4. <u>유관기관 및 영등</u> <u>포구민</u>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을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환경 및 자원 현황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을 “**종합계획을 수립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을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민간**”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및 심의
2.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 및 심의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재생·도시경관 등)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 제목 “(**자문단의 지원 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4. 유관기관 및 영등포구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

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영등포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영등포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 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제20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받은 법인·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장 총칙</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u> 를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역문화진흥법</u> 」에 따라 <u>서울특별시</u> ----- ----- ----- ----- -----.
제14조(<u>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u>)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u>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u>)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 <u>종합계획</u>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u>
	2. <u>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구성에 관한 사항</u>
	3. <u>구민의 문화다양성 증진 및</u>

	<u>확산에 관한 사항</u> 4. <u>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u> 5. <u>문화예술 환경 및 자원 현황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15조(구민의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14조의 <u>규정에 의한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u>에는 미리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5조(구민의 의견수렴) ① ----- <u>종합계획을 수립할</u> ----- ----- ----- -----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 수렴을 위해 <u>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u>
제16조(<u>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u>) ① <u>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u> 구청장은 <u>필요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② 자문단은 의장 1인을 포함한	제16조(<u>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등</u>) ① <u>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민간-----</u> ---- <u>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u>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2. 문화·예술·관광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영등포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영등포구 행정지원국장 및

을 수행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및 심의
2.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재생·도시경관 등)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삭 제>

도시국장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자문단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문화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구의 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3. 문화도시 시책의 연구 및 개발

4.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시책의 연구 및 개발

5.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

6. 구민 공감대의 형성 및 이를 위한 자료발간·보급 등 홍보

7.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의 개최

8.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발굴

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삭 제>

<삭 제>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자문단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단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

<신 설>

<신 설>

사업 관련 전문가

4. 유관기관 및 영등포구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신 설>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영등포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영등포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 선정 절차

<신 설>

<신 설>

<신 설>

를 생략한다.

제20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받은 법인·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 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8
----------	-----

발의년월일: 2021년 4월 8일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도시 추진기관인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

나. 구민의 의견 수렴 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을 신설(안 제15조제2항)

다.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제18조)

라.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제22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나. 협 의 : 문화체육과

다. 입법예고 : 2021. 4. 8. ~ 4.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을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환경 및 자원 현황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을 “**종합계획을 수립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을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민간**”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및 심의
2.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 및 심의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재생·도시경관 등)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 제목 “(자문단의 지원 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4.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영등포 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영등포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 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제20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받은 법인·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장 총칙</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u> 를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역문화진흥법</u> 」에 따라 <u>서울특별시</u> ----- ----- ----- ----- -----.
제14조(<u>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u>) <u>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제14조(<u>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u>)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 <u>종합계획</u>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u> 2. <u>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구성에 관한 사항</u> 3. <u>구민의 문화다양성 증진 및</u>

	<u>확산에 관한 사항</u> 4. <u>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u> 5. <u>문화예술 환경 및 자원 현황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15조(구민의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14조의 <u>규정에 의한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u>에는 미리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5조(구민의 의견수렴) ① ----- <u>종합계획을 수립할</u> ----- ----- ----- -----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 수렴을 위해 <u>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u>
제16조(<u>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u>) ① <u>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u> 구청장은 <u>필요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② 자문단은 의장 1인을 포함한	제16조(<u>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등</u>) ① <u>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민간-----</u> ---- <u>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u>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2. 문화·예술·관광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영등포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영등포구 행정지원국장 및

을 수행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및 심의
2.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재생·도시경관 등)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삭 제>

도시국장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자문단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문화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구의 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3. 문화도시 시책의 연구 및 개발

4.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시책의 연구 및 개발

5.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

6. 구민 공감대의 형성 및 이를 위한 자료발간·보급 등 홍보

7.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의 개최

8.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발굴

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삭 제>

<삭 제>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자문단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단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

<신 설>

<신 설>

사업 관련 전문가

4.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영등포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영등포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

<신 설>

정할 경우에는 위탁 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제20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받은 법인·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
여야 한다.